〈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9111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9. 10. 3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04. 26.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주소 및 대표 이메일 주소] baiweiyuan@naver.com

백미원(百味园)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서서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4. 26.

주식회사 서서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 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소재지(본사)	:	서울특별	시	광진구	아차산로	220,	5층508호
				(자양동,5	c유성	송천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499-100	6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499-100	6 -				
П	가맹사업 딤	당부서 : 매장	유	영본부(🅿	02-4	99-1006.	FAX: 02-	499-10	0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백미원(百味园)'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 '백미원(百味园)' 직영점 연혁
- 3. 업종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백미원(百味园)'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5. 바로 전 3년간 백미원(百味园)' 가맹점 수
- 6. '백미원(百味园)'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 8. 가맹점의 평균 · 영업기간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의 일반 정보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 11. 가맹금 예치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刑)의 선고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험
-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7. 경염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8. 공고 및 판촉 활동
-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 제공 등 내용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훈련의 주체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백미원(百	「味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20, 5층 508호(자양동,노유송천빌딩)					
(주)서서가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 6. 18.		2018. 7. 20.	조미선 02-499-1006 02-		02-499-1006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011		사업자등록번호 639		-81-0111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1)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백미원 (百味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20, 5층508호(자양동,노유송천빌딩)				
대표이사	조미선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미선	02-499-1006	02-499-1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20, 5층508호(자양동,노유송천빌딩)				
임원 (이사)	중화인민공화국 두문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1) /(1)	조미선	02-499-1006	02-499-1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	아차산로220, 5층508호((자양동,노유송천빌딩)		
감사	권혁빈	혁빈 백미원 (百味园)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미선	02-499-1006	02-499-1006		

2)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 : 해당사항이 없음(특수관계인들의 가맹사업 경험이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이 없음(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백미원(百味园)]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백미원(百味园)	백가지의 맛을 알 수 있다.
상 호	백미원(百味园) OO점	해당지역을 사용하여 가맹점상호를 정합 니다.
상표(서비스표)	The Rest Way	상표등록번호 제40-1477371 (출원번호 제40-2018-0097925호)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658,697,115	150,099,160	508,597,955	805,285,904	-51,674,566	26,756,079
2022년	649,436,131	87,275,691	562,160,440	911,826,593	-2,245,550	53,562,485
2023년	673,241,882	73,939,069	599,302,813	1,039,715,981	52,413,249	37,142,373

- *그 근거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직영점 및 가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2022년는 8월까지 운영하던 직영점 백미원.시청 매출액이 포함되었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선언역구	기금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13.11. 8. [~] 현재	미선사천마라탕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206-31-36041)	판매 총괄
	조미선	대표이사	2016. 1. 2. [~] 현재	미선미식성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131-78-00040)	판매 총괄
			2018. 7. 20.~현재	(주)서서가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기메시신			2022. 9. 01.~ 현재	주식회사 미선식품 대표이사(사업자등록번 호204-86-59897)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중화인민 공화국 두문전	사내이사	2021. 6. 30.~ 현재	(주)서서가 이사	관리
	권혁빈		2017. 8. 15.~현재	미선면식 대표자 (사업등록번호390-33-0 1634)	판매관리 총괄
		감사	2018. 7. 20.~현재	(주)서서가 감사	감사
			2022. 9. 01.~ 현재	주식회사 미선식품 사내이사(사업자등록번 호204-86-59897)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L	상근	비상근	역전구(명 <i>)</i>
2023년 12월 31일	<u>1</u>	<u>2</u>	<u>5</u>

- [※ 사업연도가 연도 말이 아닌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주) 당사 임원 3명 중 1명이 직영점[백미원]의 근무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에 신고된 총임원의 수는 1명. 총직원의 수는 5명입니다.
 - ※ 본부의 직원은 없으며 직영점의 직원수로 기재하였습니다.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The Rot Way	상표권	2018. 7. 17. 출원 2019. 4. 30. 등록	출원 제 40-2018-00979 25 등록 제40-1474371 호	(주)서서가	2029. 4. 30.
백미원	상표권	2018. 7. 17. 출원 2019. 4. 10. 등록	출원 제40-2108-009 7928호 등록 제40-1468294 호	(주)서서가	2029. 4. 10.
百味园	상표권	2018. 7. 17. 출원 2019. 4. 30. 등록	출원 제40-2018-009 7929호 등록 제40-1474372 호	(주)서서가	2029. 4. 3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백미원(百味园)] 가맹사업 현황

1. 〔 백미원(百味园) 〕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8년 7 월 20 일

[백미원(百味园)] 가맹사업(가맹점)을 시작한 날 : 2020년 12 월 20 일

2. [백미원(百味园)]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백미원(百味园)	조 미 선	2020. 12. 20. ~ 현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0 5층 508호(자양동,노유송천빌딩)

3. 〔백미원(百味园) 〕 업종

영업표지	어 남	종
베미이(공대티)	대분류	소분류
백미원(百味园)	중식	쌀국수, 마라향궈, 마라탕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백미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 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	2	<u>1</u>	_	<u>1</u>	<u>1</u>	_	<u>1</u>
서울	2	-	2	<u>1</u>	_	<u>1</u>	<u>1</u>	_	<u>1</u>
부산	_	-	-	-	_	_	-	_	_
대구	_	_	-	-	_	_	_	_	_
인천	_	_	-	_	_	_	_	_	_
광주	_	-	-	_	_	_	_	_	_
대전	_	-	-	_	_		_	_	_
울산	_	-	-	-	_	_	_	_	_
세종	_	-	-	-	_	_	-	_	_
경기	_	_	-	_	_	_	_	_	_
강원	_	-	-	_	_	_	_	_	_
충북	_	-	-	_	_	_	_	_	_
충남	_	-	-	-	_	_	_	_	_
전북	_	-	-	_	_	_	_	_	_
전남	_	_	-	-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	_	_	_	-	_	_

5. 바로 전 3년간 [백미원(百味园)] 가맹점 수 :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	_	_	1	_	-
2022	_	_	_	_	_	_
2023	_	_	_	_	_	_

- 6. [백미원]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23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구 매출액		
2023년 지역 ^④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교 ^⑤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⑦	_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_	해당없음						
대구	_	해당없음						
인천	_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_	해당없음						
강원	_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충남	_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_

경남	_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8. [백미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백미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u>2023</u>	<u>0</u>	<u>0일</u>

[백미원] 현재 가맹점사업자는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역총판이 별도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백미원]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8]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수단 기간 미포함)			비고	
	, ,	, , , <u>, , , , , , , , , , , , , , , , </u>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32
합계						
	소계					
광고	신문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KBE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KBE하나은행	가맹금예치부서	<u>서울 광진구 동일로 180</u> 화양동지점	02)463-291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KBE하나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별첨 예치신청서]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고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및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백미원(百味园)]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5,000				
가입비	22,000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기간은 협의하여
보증금	3,000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물품대금 및 이행의 지체	연장할 수 있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물품보증금	3,000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가맹점사업자의 1 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 금 포함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원과 계약종료 후 영업 표지의 철거가 완 료된 후 정산하기 로 함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5,000
가입비	22,000
교육비	초기 교육비는 없음
개점행사비	해당사항 없음
(현금)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_	60,600 ~ 78,000				
필수설비	협력업체	18,600 ~ 25,000		설치 1일전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32,000(보통형 ~40,000(고급형)		공사 전 3일 후	공사 전 계약취소	3.3㎡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보통형 약 1,391천원 추가부담(고급형의 경우 1,739천원)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10,000 ~ 13,000		공급 1일 전	상품 미공급시	

[위 표 인테리어 공사비는 사업장 76㎡(약23평) 규모를 적용하였으며 위 표의 금액은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전기시설, 화장실, 냉난방기, 도시가스설치, 가스온수기, 정화조, 소방설비 등은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 당사는 당사가 지정 또는 권장한 업체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①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원하는 지역 파악합니다. ②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그 지역의 시장특성 및 주요한 시설 그리고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 등을 고려하여 점포를 실사하고,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 등의 우려가 없는 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백미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가맹사업자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의 10% 는 계약당일에, 중도금(계약금의 50%)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부토 30일 이내 가맹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필요시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 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	豆	-	330	매월 30일	없음		-
로열티		_	해당없음	-	_	_	_
광고 분담	} 금		광고 시 분담액 결정	자세한 것은 V-8 참조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분담	그	가맹	행사별로 분담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초기	본부	기본 교육무료			-1 () k] t]	
교육훈련비	정기	_	연 2회 (1회 550)	교육실 시 701기	교육실시 1일 전 취소 및	교육실시 후 반환되지	
	특별 (수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사업자와 협의 (1일 110)	7일전	변경	않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해당없음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POS 사용	-료	추후 지정	해당없음(가맹사업자 가 리스임대)				가맹사업자가 업체를 지정함
간판임차	료	, 0	해당없음				1 , 1 , 0 1
영업표지변경 등에		가맹	실사 후				
따른 간판변경		본부	상호협의하여 결정				
영업지역보장금			해당없음				VII -1을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참고하세요
회계처리티	비용		해당없음				
지연이7	\		연 15%	기급기 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하	
<u> </u>	
는 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없음	당사는 2023년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없음	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이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백미원]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백미원(百味园)]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이하 "영업양도 등" 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위 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7)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조건 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영업양수인,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 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 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입 비(가맹금) 및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 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

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 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 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백미원(百味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개점 이후에도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_	
계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대가

당사는 [백미원(百味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2024년에 가맹사업자로부터 경제 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_	-	-	-	_	-
:	:	:	:	:	

2)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대가

당사는 [백미원(百味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2024년에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_	_	_	-	-	_	_
:	:	:	:	: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마라탕 마라향궈 충칭쏸라펀 마라쇼룽사 해물싸국수 소고기쌀국수 완자쌀국수 아채쌀국수 볶음면 파인애플볶음밥 홍콩샤오마이 충칭소면 관탕포 난징소롱포 런촨촨	왼쪽에 기재된 이외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차 위반: 구두 경고 2차 위반: 서면 시정요구 3차 위반: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익성을 유지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타가맹사업자 또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위 기재된 제품은	1차 위반: 구두 경고 2차 위반: 서면 시정요구 3차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마라탕	야채 1,600원/100g 고기 2,500원/100g		
마라향궈	15,000원		
충칭쏸라펀	6,000원~8,000원		
마라쇼룽샤	소 20,000원 대 35,000원		
해물쌀국수	10,000원		당사와 귀하는
소고기쌀국수	8,000원		시장상황이나
완자쌀국수	8,000원		소비자의 동향 등
야채쌀국수	7,000원	공문발송 및 전화통지	기타 사정을 고려,
볶음면	7,000원		권장 소비자 가격을
충칭소면	6,000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파인애플볶음밥	8,000원		서로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홍콩새우찜만두	5,000원		이 의 본 의 도 됩니다.
홍콩샤오마이	5,000원		
관탕보	5,000원		
난징쇼롱보	5,000원		
렁촨촨	5,000원(6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뱅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도 판매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 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돈이칠 어조 바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마라탕, 어라샹궈, 충칭소면, 관탕포, 소롱포 쏸라분, 쌀국수 등 중국식 요리를 전문으로 하	백미원	해당 없음	
는 가맹사업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를 원칙으로 상권에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따라 협의하여 정합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 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 여 '백미원(百味园)'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 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백미원(百味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0%	100%	0%	0%

가맹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백미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사업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7조 제1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제1항
[백미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 우	제37조 제1항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7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Al11 -1 11 A	관련
	계약 해지 사유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원 \cdot 부재료 등에 관한 대	제31조
	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1항
2	가맹점사업자가 3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제31조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1항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	제31조
	Ŷ	제1항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	제31조
	하는 경우	제1항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1조
0.	기다성심사업사기 기당근무와 학생인 현대측선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구	제1항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	제31조
	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항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제31조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 계	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경우	l된 제3	8조	제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	8조	제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을 제3	8조	제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여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명	0	30.51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	8조	제2항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게3	8조	제2항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히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ᅣ기 가 사는 제3	8조	제2항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	8조	제2항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8조	제2항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	8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서의 오기 또는 추가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제40조 제1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가맹사업상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	제40조 제2항
였을 때	제4031 제48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양도 전 잔존채무의 이행완료 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최소 5일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 규가맹계약조건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 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 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직계 존비속)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사업자의	
대리행사	본수 승인시 가능		상속인이 서면으로 승인 요청→ 당사 검토 → 승인 여부 통지→가맹점운영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권리의무	권 이전완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같은 지역 내에서] 귀하가 [백미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로부터 동의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포, 소롱포, 쏸라분, 쌀국수 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백미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영업	명절 재량 휴무 감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가맹사업자가 직접 근무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주 위임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조건 분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백미원(百味园)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비윸	부담 절차	비고
, -	0 —	1 4 1 5	е д с т	1—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과고 게히 고고 _> 가매저이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5% 정 점 전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전5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판촉행사 동의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가맹점부담액 제시 → 전체 : 전체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u	가라 유동 적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해당 없음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아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의 종료 후 3년 이내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가맹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위약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로,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대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월 금일백만원(금 1,000,000원)을 당사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 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의 사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3p~18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2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1일	
가맹금 예치	- KBE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2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 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①점포환경개선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점포환경 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ㅇ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ㅇ집기 · 장비교체비용

③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 -젂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젂포환경개선 : 50% ~ 10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 -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④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rightarrow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⑤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아래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가맹사업자와 협의에 의해 지원할 것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사항 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사항 없음				
판촉지원	해당사항 없음				
판촉집기 무상대여	해당사항 없음				
반품지원	해당사항 없음				
마일리지	해당사항 없음				
CMR	해당사항 없음				
테스터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 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 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백미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 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 매촉직을 위한 경영 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백미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42시간	없음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	24시간	연 1,10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수시) 교육	1일(8시간)	110	_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에 따라 계약 즉시 또는 개점 30일 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직영점 중 백미원.건대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년 6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³
1,039,71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부 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상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이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2-3409-8858)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 고객상담실(1600-0007)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